

서울특별시영등포구주차장특별회계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
심 사 보 고 서

2013. 9. 11.  
사회건설위원회

1. 심사경과

- 가. 제출일자 : 2013년 8월 29일
- 나. 제 출 자 : 영등포구청장
- 다. 회부일자 : 2013년 9월 5일
- 라. 상정일자 : 제177회 영등포구의회 임시회 사회건설위원회 제1차 회의(2013년 9월 9일)  
상정 의결

2. 제안설명의 요지 (제안 설명자 : 안전건설국장 오상균)

가. 제안이유

상위법령 개정에 따른 세입항목 신설과 구 재정 운영상 불가피하게 필요할 경우 주차장특별회계를 일반회계로 전출할 수 있는 근거규정을 마련하여 예산을 효율적으로 운영하고자 함.

나. 주요내용

- 1) 「주차장법」에 따른 이행강제금의 징수금을 세입항목으로 추가 신설
- 2) 주차장특별회계 자금의 일부를 일반회계로 전출할 수 있도록 하는 세출항목 신설

### 3. 전문위원 검토보고의 요지 (전문위원 : 이태선)

- 본 개정조례안은 「주차장법」 제32조에 따라 이행강제금의 세입항목을 추가 신설하고 구의 재정운영상 불가피하게 필요할 경우 주차장특별회계를 일반회계로 전출할 수 있는 근거규정을 마련하여 시행하고자 제출된 조례안임.
  - 특별회계는 「지방재정법」 제9조제2항에 따라 특정사업을 운영할 때 또는 특정자금이나 특정세입·세출과 구분하여 회계처리 할 필요가 있을 때에만 법률이나 조례로 설치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며,
  - 「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운영기준」에서는 일반회계 예산과의 전·출입은 자치단체 자금운영 등 불가피한 경우에 한하여 허용하고 있음.
  - 이 경우 주차장법 제22조에서는 징수한 주차요금 등은 주차장 설치·관리 및 운영외의 용도에 사용할 수 없도록 규정되어 있음.
  - 따라서 본 개정안은 경기침체로 인한 세입의 감소와 복지비 등 주요사업비의 증가에 따른 구 재정 운영의 어려움을 완화하고자 주차장특별회계의 여유 자금 일부를 일반회계로 전출할 수 있는 근거규정을 신설하여 원활한 재정 운영을 도모하려는 것으로 법적인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됨.
- 다만, 우선적으로 기존 일반회계 세입예산의 체납징수 노력과 세출예산의 집행에 따른 계획의 변경이나 절감을 통해 더 유용한 사업에 투자될 수 있도록 세심한 검토와 주차장특별회계 세입예산 중 일반회계로 전출이 불가한 예산에 대한 세입금 정리방법 등 본 개정안에 대해 심도 있는 심사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됨.
- 그 밖의 조항은 상위법령 내용을 반영하여 세입항목인 이행강제금 조항을 신설하고,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맞춰 미비점을 보완한 것으로 별다른 문제점은 없음.

## 4. 수정안 요지

### 가. 수정이유

- 특별회계의 일반회계 예산과의 전·출입은 구의 재정운영상 불가피한 경우에 한하여 허용되어야 하므로, 주차장 특별회계를 일반회계로 전출할 수 있는 개정조항에 대하여 유효기간 규정을 두어 한시적으로 시행하고자 함

### 나. 주요 골자

- 「부칙 제2조(유효기간) 제4조제8호 규정은 2013년 12월 31일까지 효력을 가진다.」 신설

## 5. 심사결과 : 수정안 가결

# 서울특별시영등포구주차장특별회계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안

|          |             |
|----------|-------------|
| 의안<br>번호 | 관 련<br>232호 |
|----------|-------------|

제안년월일 : 2013. 9.

제 출 자 : 오현숙 위원 외 1명

## 1. 수정이유

- 특별회계의 일반회계 예산과의 전·출입은 구의 재정운영상 불가피한 경우에 한하여 허용되어야 하므로, 주차장 특별회계를 일반회계로 전출할 수 있는 개정조항에 대하여 유효기간 규정을 두어 한시적으로 시행하고자 함

## 2. 주요골자

- 「부칙 제2조(유효기간) 제4조제8호 규정은 2013년 12월 31일까지 효력을 가진다.» 신설

# 서울특별시영등포구주차장특별회제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안

서울특별시영등포구주차장특별회제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중 다음과 같이 수정한다.

부칙 제2조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제2조(유효기간) 제4조제8호 규정은 2013년 12월 31일까지 효력을 가진다.

## 부칙

제1조(시행일)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제2조(유효기간) 제4조제8호 규정은 2013년 12월 31일까지 효력을 가진다.

# 서울특별시영등포구주차장특별회계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|          |         |
|----------|---------|
| 의안<br>번호 | 제 232 호 |
|----------|---------|

제출연월일 : 2013. 8.

제 출 자 : 영등포구청장

## 1. 제안이유

「복지비의 대폭 증가에 따른 구 재정운영의 어려움을 완화하고 예산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주차장특별회계의 세출을 일반회계로 전출할 수 있는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고자 함.

## 2. 주요내용

가. 세입항목 구체화

- 주차장법 제32조에 따른 이행강제금의 징수금(제3조제10호 신설)

나. 회계 간 이관 전출의 제도적 마련(제4조제8호 신설)

- 구 재정 여건상 불가피하게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의 일반회계 전출금. 다만, 제3조제1호, 제3호, 제5호, 제7호, 제10호에 따른 세입은 각각 제외한다.

다. 법제처의 「알기쉬운 법령 정비기준」에 따라 조문 일부정비

## 3. 참고사항

가. 관계법령 : 「주차장법」

나. 예산조치 : 해당없음

다. 합 의 : 합의되었음

라. 기 타

(1) 입법예고(2013.7.25 ~ 8.14, 20일간) : 의견없음

(2) 규제심사 : 대상사무 없음

(3) 부패영향평가 : 평가실시(의견반영)

(4) 성별영향평가 : 평가실시(의견없음)

붙임 :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주차장 특별회계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부.

## 서울특별시영등포구주차장특별회계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서울특별시영등포구주차장특별회계설치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**제명** “서울특별시영등포구주차장특별회계설치조례”를 “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주차장 특별회계 설치 조례”로 한다.

**제1조** 중 “주차장법(이하 “법”이라 한다) 제21조의2의 규정에 의한”을 “「주차장법」 제21조의2에 따라”로, “운영에 관하여”를 “운영에”로 한다.

**제2조** 중 “영등포구”를 “서울특별시 영등포구(이하 “구”라 한다)”로 한다.

**제3조** 각 호 외의 부분 중 “각호”를 “각 호”로 하고, 같은 조 제1호 중 “법 제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구청장”을 “「주차장법」(이하 “법”이라 한다) 제8조제1항에 따라 서울특별시 영등포구청장(이하 “구청장”이라 한다)”으로 하며, 같은 조 제2호, 제3호 및 제6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.

2. 「서울특별시 정차·주차위반차량 견인 등에 관한 조례」 제4조에 따른 견인료
3. 법 제12조제1항에 따라 구청장이 설치한 노외주차장의 주차요금
6. 「도로교통법」 제161조제1항제3호에 따른 과태료

**제3조제7호** 중 “법 제19조제5항의 규정에 의한”을 “법 제19조제5항에 따른”으로 하고, 같은 조 제8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.

8. 법 제24조의2에 따른 과징금의 징수금

**제3조제9호** 중 “법 제30조의 규정에 의하여”를 “법 제30조에 따라”로 하고, 같



은 조에 제10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, 같은 조 제11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.

10. 법 제32조에 따른 이행강제금의 징수금

11. 그 밖의 잡수입

**제4조** 각 호 외의 부분 중 “각호”를 “각 호”로 하고, 같은 조 제5호 및 제7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하며, 같은 조에 제8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5. 「서울특별시 정차·주차위반차량 견인 등에 관한 조례」 제5조제2항에 따른 비용

7. 불법 주·정차 단속공무원에 대한 실적포상금

8. 구 재정 여건상 불가피하게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의 일반회계 전출금.

다만, 제3조제1호, 제3호, 제5호, 제7호, 제10호에 따른 세입은 각각 제외한다.

**제5조제1항** 중 “부족한 때”를 “부족한 경우”로 하고, 같은 조 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.

②제1항에 따른 일시차입금의 원리금은 해당 회계연도에 상환하여야 한다.

**제6조** 중 “다음년도”를 “다음연도”으로 한다.

**제8조** 중 “시행에 관하여”를 “시행에”로 한다.

부칙

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## 신 · 구조문대비표

| 현             | 행   | 개             | 정   | 안   |
|---------------|---|---------------|---|---|
| 제1조(목적)       | 이 조례는 주차장법(이하 “법”이라 한다) 제21조의2의 규정에 의한 주차장 특별회계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. | 제1조(목적)       | -----   | 「주차장법」 제21조의2에 따라 -----<br>----- 운영에 -----<br>----- |
| 제2조(특별회계의 설치) | 영등포구에 주차장특별회계(이하 “회계”라 한다)를 설치한다.   | 제2조(특별회계의 설치) | 서울특별시 영등포구(이하 “구”라 한다)-----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-----   |
| 제3조(세입)       | 회계의 세입은 다음 각호의 수입으로 한다.   | 제3조(세입)       | -----   | 각 호 -----   |
| 1.            | 법 제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구청장이 공영주차장의 수탁관리 능력이 있다고 인정하는 법인 또는 개인에게 위탁한 노상주차장의 주차요금 또는 위탁수익금 | 1.            | 「주차장법」(이하 “법”이라 한다) 제8조제1항에 따라 서울특별시 영등포구청장(이하 “구청장”이라 한다)----- | -----   |
| 2.            | 서울특별시정차·주차위반차량견인 등에관한조례 제4조의 규정에 의한 견인료   | 2.            | 「서울특별시 정차·주차위반차량 견인 등에 관한 조례」 제4조에 따른 견인료                       | -----   |
| 3.            | 법 제1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영등포구청장(이하 “구청장”이라 한다)이 설치한 노외주차장의 주차요금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3.            | 법 제12조제1항에 따라 구청장이 설치한 노외주차장의 주차요금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-----   |
| 4.~5.         | (생략)  | 4.~5.         | (현행과 같음)  | -----   |
| 6.            | 「도로교통법」 제161조제1항제3호의 규정에 의한 과태료   | 6.            | 「도로교통법」 제161조제1항제3호에 따른 과태료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-----   |
| 7.            | 법 제19조제5항의 규정에 의한 부   | 7.            | 법 제19조제5항에 따른 -----   | -----   |

설주차장 설치면제를 위한 비용의  
납부금

8. 법 제24조의2의 규정에 의한 과징  
금

9. 법 제30조의 규정에 의하여 부과  
하는 과태료

<신 설>

11. 기타 잡수입

제4조(세출) 회계의 세출은 다음 각호의  
용도외에는 사용할 수 없다.

1. ~ 4. (생략)

5. 「서울특별시 정차·주차위반차량 견  
인 등에 관한 조례」 제5조제2항의  
규정에 의한 대행비용

6. (생략)

7. 기타 단속공무원에 대한 실적포상  
금

<신 설>

제5조(일시차입) ①회계의 운영자금이  
일시적으로 부족한 때에는 일시차입할  
수 있다.

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일시차입금의  
원리금은 당해 회계연도내에 상환하여

-----

8. 법 제24조의2에 따른 과징금의 징  
수금

9. 법 제30조에 따라 -----  
-

10. 법 제32조에 따른 이행강제금의  
징수금

11. 그 밖의 잡수입

제4조(세출) ----- 각 호  
-----.

1. ~ 4. (현행과 같음)

5. 「서울특별시 정차·주차위반차량 견  
인 등에 관한 조례」 제5조제2항에  
따른 비용

6. (현행과 같음)

7. 불법 주·정차 단속공무원에 대한  
실적포상금

8. 구 재정 여건상 불가피하게 필요하  
다고 인정되는 경우의 일반회계 전  
출금. 다만, 제3조제1호, 제3호, 제  
5호, 제7호, 제10호에 따른 세입은  
각각 제외한다.

제5조(일시차입) ①-----  
----- 부족한 경우-----  
-----.

②제1항에 따른 일시차입금의 원리금  
은 해당 회계연도에 상환하여야 한다.

야 한다.

제6조(잉여금의 처리) 회계의 결산잉여  
금은 다음년도 세입에 이월한다.

제8조(시행규칙)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  
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.

제6조(잉여금의 처리) -----  
---- 다음연도-----.

제8조(시행규칙) ----- 시행에 ---  
-----.